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12. ~ 12. 23.)

3) 행정규제 :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 ① ~ ④ (생략) <u>⑤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</u> <u>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</u> <u>는 비상자동제동장치”란 「자</u> <u>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</u> <u>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61</u> <u>호에 따른 비상자동제동장치로</u> <u>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에 따른</u> <u>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</u> <u>장치를 말한다.</u> ⑥ ~ ⑧ (생략)	제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⑥ ~ ⑧ (생략)